

## II. 정정보도청구사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5.자 (2004가합12371) (확정)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5일 이○○이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와 소속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와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쌍방은 피고 회사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위 청구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중재신청사건을 피고 회사와의 화해로 종결시킨 이후 이와 별도로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다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정간법에 기한 중재합의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가 해외 불법취업알선 조직의 행태와 그 검거과정 및 그 조직의 알선에 따라 일본으로 간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수집하여 그 실태를 알림으로써 향후 그와 같은 피해 여성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해외 불법취업 조직의 알선으로 일본으로 간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보도하면서 일본에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해 여성들의 금원을 갈취하고 폭행을 했다고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4년 6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278)을 하여 중재결과 반론보도로 합의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12371 정정보도등

원 고 :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면 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 기 복

피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820

대표이사 송 도 균

2. 윤 □ □

서울 양천구 목동 820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담당변호사 박 영 주, 이 민 서

변 론 종 결 : 2007. 6. 14.

판 결 선 고 : 2007. 7. 5.

주 문 :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일본으로 간 여인들 - 해

외불법송출의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12호증, 갑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 을 8호증, 을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 을 18호증, 을 36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4(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및 피고 윤□□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7호증의 1 내지 9,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4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본 ○○○현 ○○○시에서 ‘○○ 에스떼’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업을 실질적으로 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며, 피고 윤□□은 2004. 5. 22. 23:05경부터 24:00경까지 방영된 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 나. 정△△의 이 사건 업소에의 취업과 그 곳에서의 생활

1) 정△△(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김미영’으로 불리운 자이다)는 2003. 8. 12. 이혼을 한 후, 식당 등에서 일을 하던 중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3. 11. 25.경 해외 취업 알선 광고를 보고 서울 ○○구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찾아 갔고, 위 직업소개소의 소장인 김○○으로부터 소위 일본의 ‘에스떼’라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업체에의 취업을 권유 받았다.

2) 정△△는 2003. 12. 2.경 다시 위 직업소개소를 방문하여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업소에의 취업과 관련한 면접을 보고, 정△△가 이 사건 업소에서 올리는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여 위 업소에서 일을 하기로 원고와 확정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선불금으로 400만 원

을 받아 김○○에게 취업 알선과 관련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정△△는 2003. 12. 12. 일본의 이 사건 업소로 갔고, 그 무렵부터 2004. 5. 2.까지 이 사건 업소 내에 구분되어 있는 약 10㎡ 남짓한 마사지실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시간(1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에는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마사지일을 하였으며, 2004. 1. 12.부터는 출장 마사지업체인 ‘△△△’의 종업원으로서 출장 마사지를 가서 성매매도 함께 하였다.

4) 정△△는 이 사건 업소에서 2달 넘게 일을 하면서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원고는 정△△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정△△가 일본에서 생활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원고로부터 가불을 받은 금원 및 숙박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매달 청구하는 금원을 공제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정△△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에 정△△는 2004. 3. 5. 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업소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되자 2004. 3. 7. 정△△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하였으며, 정△△의 여권을 빼앗아 복사를 하여 정△△의 한국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정△△를 지명하여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자, 2004. 4. 12. 정△△에게 마사지일을 다시 배우라고 하였고, 정△△가 도저히 못하겠다고면서 한국에 가고 싶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업소로 옮겨 달라고 하자, “누가 너를 데리고 가겠냐. 네가 갈 곳은 (야쿠자) ○○○한테 말해서 15년 동안 빼도 박도 못하고 몸만 팔아야 하는 그런 데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를 구타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신뢰하는 박△△, 박○○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정△△에게 마사지일을 가르치도록 시키면서 정△△가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때려도 좋다고 하였고, 정△△는 그 무렵부터 원고뿐 아니라 다른 종업원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으며, 원고의 눈치가 보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소 밖으로 나갈 때에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나갈 수 있었다(원고가 없을 경우에는 원고가 신뢰하는 종업원인 박○○ 또는 야쿠자로 보이는 ○○○라는 일본 남자 등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였다).

7) 가) 정△△는 원고 및 종업원들의 구타, 마사지일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자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원고에 대한 빚을 갚고 위 업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5. 2. 정△△의 어머니로부터 정△△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 윤□□ 등의 도움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을 나왔다.

나) 정△△는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을 나올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였으나, 당초 원고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기는 커녕 원고에 대한 채무가 5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및 방송경위

1) 피고 윤□□은 2004. 4. 말경 서울시경찰청에서 해외 불법취업알선 조직에 관하여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법취업알선 조직의 행태와 그 검거과정 및 위 조직의 알선에 따라 일본으로 나간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그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범죄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2) 피고 윤□□은 서울시경찰청 김○○ 형사로부터 불법취업알선자를 통하여 일본으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갔다가 15일만에 도망나온 김○○를 소개받아 김○○의 진술을 확인하고 일본 현지의 취업 실태 등을 취재하기 위하여 2004. 4. 28. 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조연출 및 촬영담당인 김○○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3) 피고 윤□□은 일본 현지 안내자인 박□□(이하 피고 윤□□, 김○○, 촬영관계자, 박□□를 '피고 윤□□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04. 4. 29.부터 일본 현지 촬영을 시작하였고, 첫 날은 김○○가 탈출한 업소가 있는 가와사키 지역의 유흥가를 취재하러 갔는데, 야쿠자로 추정되는 사람 2~3명이 위 취재를 제지하여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었다.

4) 피고 윤□□ 등은 2004. 4. 30. 한국에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가로부터 일본 ○○○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한국인 여성(정△△)가 구타와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시민단체에 와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일본의 시민단체인 '소셜 마이너리티' 상담소의 ○○○○○ 등을 만나 정△△에 대한 구조 문제를 상담하였으나, 일본 상담자로부터 대부분의 여성들이 불법체류신분이고, 그러한 업소들은 보통 야쿠자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취재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합법적인 구조도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5) 가) 피고 윤□□ 등은 2004. 5. 1. 일본 ○○○시로 가서 이 사건 업소의 주위에서 그 업소를 관찰하면서 위 업소에 정△△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화로 확인하고, 피고 윤□□과 박□□가 이 사건 업소의 아래에 있는 다른 에스페 업소를 먼저 방문하여 에스페 업소의 영업 형태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다.

나) 피고 윤□□과 박□□는 2004. 5. 2. 00:00경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박□□는 정△△를 지명하여 정△△와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 윤□□은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는 이 사건 업소의 각 마사지실의

벽이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말소리가 새어나갈 것을 염려하여 정△△와 필담을 나누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을 가고 싶은지를 물었고, 정△△는 박□□에게 '정말 가고 싶은 한테 여기 마마 술집 등의 여주인을 의미하는 일본어가 야쿠자를 끼고 하고 자기 돈 떼어 먹으면, 한국에도 아는 깡패가 많다고 했고 만일 돈을 안 갚고 제가 도망갈 시에는 인터넷에다가 제 사진 다 올리고 민·형사상 재판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돈을 번다 하더라도 제 돈이 아니고 전부 마마가 관리하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적응을 못해서 많이 맞기도 맞았어요, 처음 오는 날부터 마마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순간까지도 나를 미워하다가 자꾸 어린 애들한테도 일 못하니까 때리라고 시키고 욕하고 그렇다고 시메가 없는 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지금은 애들한테도 제가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당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못 만난다면 제가 못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환(야쿠자)은 어떻게 해요? 가족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오늘 이따가는 제가 아예 도망가는거죠?' 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박□□는 정△△가 업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물었고, 정△△는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업소 근처의 편의점 앞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6) 정△△는 2004. 5. 2. 새벽 3시가 넘자 담배를 사러 다녀오겠다며 이 사건 업소를 나와 미리 약속한 편의점 앞에서 피고 윤□□ 등을 만나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나왔고, 도망가는 차 안에서 피고 윤□□ 등과 이 사건 업소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7) 피고 윤□□은 일본 시민단체에 정△△의 보호를 요청하고 정△△와 일본 시민단체의 상담 과정을 취재한 다음 정△△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일본 현지에서의 취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2004. 5. 4. 한국으로 돌아왔다.

8) 그 후 피고 윤□□은 정△△의 취업을 알선하여 준 김○○의 직업소개소를 취재하고, 일본 에스페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2~3명을 인터뷰하여 에스페는 구강 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이고, 일본의 업소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을 갚을 계획으로 선불금을 받고 일본에 오더라도 생활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많아 구조적으로 돈을 갚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에 의하여 해외 불법취업알선 조직이 체포되는 과정을 취재하였다.

9) 피고 윤□□은 위와 같이 취재한 것을 기초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4. 5. 22. 23:05경부터 24:00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와 관

련있는 내용은 별지 2 보도내용의 기재와 같다.

1) 도입부분 : 지난 5월 초 한 어머니가 일본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딸이 구타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니 도와 달라며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 시민단체로 찾아 왔다. 그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 그 곳에는 3층 건물 모두 남성 전용 마사지실인 일명 에스떼가 영업 중이었다(이 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의 일본어 간판이 모자이크 처리 등이 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송되었다). 제작진은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가서 김미영(정△△의 방송상 가명)을 만나 탈출의사를 확인하였고,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무렵 도망나온 김미영을 데리고 나왔다.

2) 김미영과의 인터뷰 부분 : 이 사건 업소는 마사지실이라고 했지만, 전화 성매매업까지 하고 있었고, 김미영은 그 업소에 온 첫날부터 기가 죽어 일도 서툴렀는데, 그 때부터 구타가 시작되어 주먹으로도 맞고 물건으로도 맞았다. 업주의 눈치가 보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지만, 마사지일과 전화 성매매까지 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실 안에서 숙식을 다 하지만 손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달 동안 600만 원을 벌었지만 선불금도 다 갚지 못하였고, 두 달 동안은 마마의 돈이 된다.

3) 일본 동경 신주쿠의 유흥가 촬영 및 직업소개소 촬영 부분 : 신주쿠의 유흥가에는 한국인 종업원이 많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일본으로 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미영이 소개를 받아 왔다는 한국의 직업소개소를 찾아 갔다. 직업소개소 직원은 일본에 쉽게 갈 수 있고, 25일만 일을 해도 5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소개한다.

4) 일본 업소 탈출자의 인터뷰 및 경찰의 불법취업알선 조직 단속 촬영 부분 : 안영옥(가명)은 한달에 600만 원을 보장하고 성매매는 없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갔으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여 도망을 나왔다. 경찰은 안영옥의 일본 취업을 알선한 불법조직 일당을 국외이송 목적 부녀자 유인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이들은 여성들을 일본에 취업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일인당 수백만 원어치의 옷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5) 일본에 취업한 여성들의 생활 실태 부분 : 일본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업소의 방침에 따라 옷을 사거나 미장원을 가야하고, 숙소비, 지각에 따른 벌금 등 돈이 나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생각처럼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고, 더 이상 업주에게 빚을 지지 않기 위하여는 사실상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다. 선불금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여성들을 술집에 묶어 두고 부적절한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

6) 일본의 술집과 야쿠자의 관계 부분 : 지난 해 8월 유선미(가명)는 일본 업소에서 도

망을 나와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한 달 뒤 야쿠자가 한국으로 유선미를 찾아와 선불금을 갚으라고 위협을 하였다. 업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만 둔다고 하면 섬으로 팔아버린 다거나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한다.

7) 끝부분 :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 착취와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고, 성을 산업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뒷에 걸린 모든 여성은 피해자이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후의 정황

1) 원고는 2004. 6.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① 정△△가 이 사건 업소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 ② 정△△가 감금된 상태에서 감시당하고 밥도 못먹었다는 부분, ③ 정△△가 구타당했다는 부분, ④ 정△△가 일을 하여 번 돈을 원고가 갈취하고 있다는 부분, ⑤ 정△△가 매춘을 강요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4. 6. 28.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피고 회사가 2004. 7. 3.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별지 3 중재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그러한 내용의 중재조서가 작성되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중재합의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주지시켰다.

3) 피고 회사는 2004. 7. 3.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끝부분에서 별지 3 중재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하였다.

##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본안전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① 정△△가 돈을 벌려고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일본에 왔고, ② 일본에 온 첫날부터 일이 서투르다고 원고와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으며, ③ 정△△가 감금된 상태에서 감시당하며 일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있고, ④ 일을 하여 번 돈을 착취당하였으며, ⑤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방송한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된 것, 위 법은 2005. 1. 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7369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은 언론 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2.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와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쌍방은 피고 회사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중재신청사건을 피고 회사와의 화해로 종결시킨 이후 이와 별도로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다시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할 것을 전제로 위 중재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가 요청하는 반론보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포기하는 취지로 피고 회사와 중재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정간법에 기한 중재합의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윤○○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윤○○에 대하여도 피고 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그러한 보도를 정정하는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건대, 정정보도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출판물 등의 발행인, 방송사업자, 인터넷 신문 운영자 등이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 윤○○은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에 지나지 아니하여 방송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성명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의 위치 및 외관, 일본어로 상호가 기재된 이 사건 업소의 간판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원고를 이 사건 업소의 ‘마마’로 칭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정△△를 구타한 사람이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 2) 명예훼손의 성립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그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그 방송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원고의 업소에 취업을 한 정△△를 구타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면서 정△△가 성매매를 포함하는 일을 하여 번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를 섬으로 팔아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정△△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그냥 일본으로 왔다’라는 부분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정△△가 이 사건 업소에 취업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쉽게 취업결정을 하였다는 위 방송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피고 윤□□ 및 피고 윤□□의 사용자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2) 공공성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방송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 불법취업알선 조직의 행태와 그 검거과정 및 그 조직의 알선에 따라 일본으로 간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수집하여 그 실태를 알림으로써 향후 그와 같은 피해 여성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진실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는 이 사건 업소 내의 마사지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후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마사지 일을 하였고, △△△라는 상호로 원고가 운영하는 출장 마사지업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하기도 한 사실, 정△△가 이 사건 업소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정△△를 찾는 손님도 많지 아니하자, 원고는 정△△를 탓하면서 구타를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섬으로 팔아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정△△에게 마사지 일을 가르치도록 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정△△를 때려도 좋다고 하여 위 종업원들도 정△△를 구타한 사실, 원고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정△△는 원고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에 업소 내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정△△는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숙박비, 식비 등을 비롯한 생활비가 많이 들어 선불금 400만 원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 나올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프로그램 중 별지 2 보도내용 중 ②부분의 방송내용은 정△△가 마사지일이 서투라서 제대로 하지 못하자 그때부터 원고가 정△△를 구타하였다는 취지 또는 정△△가 이 사건 업소에 온 첫날부터 원고가 정△△를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각 이해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원고가 정△△를 정△△가 이 사건 업소에 온 첫날부터 구타한 것은 아닌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일반 시청자가 위 방송내용을 위 두 번째의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를 구타하였다는 전체적인 방송내용의 취지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것이고, 다만 구타의 기간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방송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임을 인정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별지 2 보도내용 중 ①, ③부분의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방송부분은 원고가 정△△를 감금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①, ③부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김 은 정

판사 정 경 희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3〉 중재합의서 생략 - 편집자 주

□

##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서울고등법원 2007. 9. 19.자 판결 (2006나106066) (확정)

###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19일 국회의원 임종인의원이 주식회사 와이티엔과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피고 와이티엔이 「뉴스Q 2부」 ‘돌발영상’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방송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동료의원들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원고 몰래 촬영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한 널리 허용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언론보도에 의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원고는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 중 원고가 등장하는 제3장면은 원고가 국회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공적 영역

이라 할 것이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과 대화가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의 보도내용, 보도경위 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1심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14집 58~64면 참조).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6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253)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을 내린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나106066 정정보도등

원 고, 항 소 인 : 임 중 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3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피 항 소 인 : 1. 주식회사 와이티엔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대표이사 표 완 수

2.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 젤존타워

대표이사 김 도 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7. 11.

판 결 선 고 : 2007. 9. 19.

주 문 :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 방송하는 뉴스Q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3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tn.co.kr)의 초기화면에 별지3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연결되게 하라. 만약 피고들이 위 정정보도문의 방송 및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각자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수정하고, 간접강제 청구를 추가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 방송하는 뉴스Q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tn.co.kr)의 초기화면에 별지2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연결되게 하라.

이 유 : 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간접강제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진현  
판사 이우철

〈별지 1~3〉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개인이 속한 단체가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자 판결 (2006가합110655)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자 판결 (2006가합110662) (확정)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10일 대통령 비서실이 주식회사 문화일보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각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문화일보는 2006년 10월 27일 31면에 「노정권 ‘친북기조’와 ‘386 간첩단’」 제하의 사설을, 2006년 10월 30일 1면에 「대북 포용론자와 갈등 ‘폭발’」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4면에 「해실험 후 청·통일부-국정원 충돌」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31면에 「2007 대선까지 불게 물들이려 한 ‘386 간첩단’」 제하의 사설을, 2006년 10월 31일 7면에 「김승규 원장측 “타의에 의한 사퇴”」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31면에 「386 간첩단 수사하는 ‘김승규 국정원’ 흔들지 마라」 제하의 사설을 각 게재하였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6년 10월 28일 A3면에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력」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A5면에 「‘간첩단’ 발표 바로 다음날, 왜 김원장이 사의를…」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A35면에 「‘386 간첩단’ 수사 도중 물러나는 국정원장」 제하의 사설을, 2006년 10월 30일 A3면에 「국정원 내부갈등 불거지나」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A4면에 「“압력설 맞다” vs. “아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국정원장 사임 압력설」 제하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대통령 비서실)는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 핵심들’, ‘여권 386 세대들’, ‘여권 내 386 인사’, ‘정치권 386 인사’, ‘386 출신 권력 핵심’ 이라는 표현들을 들어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 어떤 보도에서 지칭된 개인과 그가 속한 단체 또는 기관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에 대한 보도가 그 개인이 속한 단체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바,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 핵심들’ 등의 표현에 의하여 지칭되는 특정인들이 원고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10655 정정보도청구

원 고 : 대통령 비서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대표자 비서실장 이 병 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피 고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인 제, 하 죽 봉, 박 춘 희

변 론 종 결 : 2007. 9. 12.

판 결 선 고 : 2007. 10. 1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문화일보 제1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내용은 다른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통령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위 법령에는 원고의 총 정원이 53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문화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06. 10. 27. 31면에 별지2 기재 사설을, 2006. 10. 30. 1면에 별지3 기재 기사를, 같은 날 4면에 별지4 기재 기사를, 같은 날 31면에 별지5 기재 사설을, 2006. 10. 31. 7면에 별지6 기재 기사를, 같은 날 31면에 별지7 기재 사설(위 기사 및 사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을 문화일보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386 간첩단사건'의 피의자들이 청와대 386 비서진들과 수시로 교유해왔으며, 청와대 386 비서진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설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단순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 가. 언론중재법의 규정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개별적 연관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조직체계 및 그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위 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정정보도의 소를 제기할 능력이 있음에는 별 다른 의문이 없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지(개별적 연관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sup>1)</sup> 핵심들’, ‘여권 386 세대들’, ‘여권 내 386 인사’, ‘정치권 386 인사’, ‘386 출신 권력 핵심’이라는 표현들을 들어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 어떤 보도에서 지칭된 개인과 그가 속한 단체 또는 기관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에 대한 보도가 그 개인이 속한 단체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바,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 핵심들’ 등의 표현에 의하여 지칭되는 특정인들이 원고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말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를 말한다. 주로 1980년대에 학생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를 통칭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이 중 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7〉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10662 정정보도청구  
원 고 : 대통령 비서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대표자 비서실장 이 병 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인 제

변 론 종 결 : 2007. 9. 12.

판 결 선 고 : 2007. 10. 1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 선일보 A1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내용은 다른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통령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위 법령에는 원고의 총 정원이 53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06. 10. 28. A3면에 별지2 기재 기사를, 같은 날 A5면에 별지3 기재 기사를, 같은 날 A35면에 별지4 기재 사실을, 2006. 10. 30. A3면에 별지5 기재 기사를, 같은 날 A4면에 별지6, 7 기재 기사(위 기사 및 사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조선일보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386 간첩단사건'의 피의자들이 청와대 386 비서진들과 수시로 교류해왔으며, 청와대 386 비서진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설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단순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 가. 언론중재법의 규정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개별적 연관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조직체계 및 그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위 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정정보도의 소를 제기할 능력이 있음에는 별 다른 의문이 없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지(개별적 연관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정치권의 386<sup>2)</sup>들’, ‘청와대의 386 비서진’, ‘청와대 386 인맥’, ‘여권내 386 세력’이라는 표현들을 들어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 어떤 보도에서 지칭된 개인과 그가 속한 단체 또는 기관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에 대한 보도가 그 개인이 속한 단체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데,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청와대 386 비서진’ 등의 표현에 의하여 지칭되는 특정인들이 원고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별지7 기재 기사의 경우에 그 일부 내용과 원고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사 내용 중에서 정정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않은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 론

2)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말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를 말한다. 주로 1980년대에 학생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를 통칭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7〉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자 판결 (2006가합98182) (확정)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11월 7일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6년 8월 14일 「또 가짜 명품시계?」 제하의 기사를, 같은 달 16일 「스위스 ‘한국 명품시계’ 진상조사 착수」, 「스위스 시계만 수백종 ... 전문가도 다 몰라」 제하의 기사를, 같은 달 17일 「환불 ... 신흥브랜드 입점 까다롭게」 제하의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원고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시계가 그 가격에 맞는 내실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고 한 부분은 비록 피고 조선일보가 각 기사에서 이 사건 시계를 지칭함에 있어 '가짜 명품시계' 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소위 명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특정상품의 명품여부에 관해 각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가 다른 사실의 적시 없이 바로 이 사건 시계를 가짜 명품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이 지칭한 점, 따라서 그와 같이 지칭한 근거가 된 사실의 적시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서 이 부분이 따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8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329)을 하여 조정결과 조정불성립결정을 받은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98182 정정보도등  
 원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7. 10. 10.

판 결 선 고 : 2007. 11. 7.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부에 제목은 조선일보 2006. 8. 16.자 A9면 상단 '명품시계' 관련 기사 제목의 활자 크기로, 본문은 같은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

보도요구문을 게재하라. 피고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그 위반일부터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는 조선일보에 원고가 수입, 판매한 'OOOOO(OOOOO)'라는 상호의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별지2 기재 기사를, 같은 달 16. 별지3, 4 기재 각 기사를, 같은 달 17. 별지5 기재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 인정사실 :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 기사를 통해 원고가 가짜 명품시계를 수입,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민법 제764조에 규정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위 2006. 8. 14.자 별지2 기재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일반론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

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민법 규정에 따른 정정보도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와는 달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모두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전제로 비로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한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

(3)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4)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의 위 각 기사에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었는지 및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위 각 기사의 구성 및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1) 먼저, 위 각 기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하여 보면, 위 각 기사는, “이 사건 시계의 수입, 판매사인 원고의 광고와는 달리, 이 사건 시계가 18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OOOO OOOO’라는 인물도 이 사건 시계의 제조사인 OOOOO사(이하 이 사건 제조사라 한다)의 창업주가 아니며, 이 사건 제조사의 본사와 공장도 제네바가 아닌 끼아소에 있고, 이 사건 시계가 일본, 미국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시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스위스 시계협회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국내 판매업체들은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라는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먼저, 편의상 ㉡ 부분에 관하여 살펴건대, 비록 피고가 위 각 기사에서 이 사건 시계를 지칭함에 있어 ‘가짜 명품시계’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

으나, 소위 명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특정상품의 명품여부에 관해 각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가 다른 사실의 적시 없이 바로 이 사건 시계를 가짜 명품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㉔ 부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이 지칭한 점, 따라서 그와 같이 지칭한 근거가 된 사실의 적시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기사 중 ㉔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서 이 부분이 따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부분은, “원고의 광고와는 달리, 이 사건 시계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창업자 및 제조사의 정체, 판매실적 등도 의심스러우며 스위스 시계협회가 이 사건 시계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백화점들과 홈쇼핑 업체에서 환불조치도 해주고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 시계를 수입, 판매한 원고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여부

(1) 공익성 여부

위 각 기사는 소비자들에 의해 엄청난 고가에 판매되고 있던 이 사건 시계가 그 가격에 걸맞는 명성과 내실을 지니고 있는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기사를 보도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시계에 관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180년 숨결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태리 명품 브랜드 ○○○○ ○○○○는 해외파 유학생들과 해외 출장이 잦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명품 주얼리 시계 브랜드로, 유럽의 감각 있는 트렌드 세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이다.

○○○○는 3대에 걸쳐 시계와 주얼리를 만드는 이태리의 전통적인 기업으로, 창립자인 ○○○○ ○○○○(○○○○)가 젊은 시절 시계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모나코와 자신의 시계에 대한 열정을 본 주변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붙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의 1대이

자 창립자인 ○○○○ ○○○○는 1822년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시계를 만드는 것에 소질을 보였던 그는 정밀하고 세련된 시계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는 아버지의 지원과 격려로 고향 근처의 작은 시계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스위스와 프랑스 그리고 모나코에서 유명한 시계 제조업자 아래에서 공부하게 된 ○○○○는 이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 ○○○’라는 별칭으로 불리어진다. 바로 그 이름이 오늘날 브랜드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저 유럽에 걸쳐 고급시계 업계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달성하는 자’로 명성을 얻게 된다. 현재 ○○○○사는 3대에 걸쳐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 열정과 장인정신, 기술력은 과거의 업적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후손들과 ○○○○○사에 의해 지금도 계승 및 발전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조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 ○○○(○○○)는 진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 ○○○○는 자신의 아버지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째 계속하여 귀금속 제조에 종사해 왔으나, 실제로 시계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경부터였다.

- ○○○ ○○○○는 2002년경 최초로 시계제조업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의 매제인 ‘○○○○ ○○○○’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계기술자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점에 착안하여 그의 장인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시계에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 이 사건 제조사는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아레쥬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다가 2003년 말 경 본사 및 공장을 스위스의 끼아소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시계상표에 있어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는 제네바 상표(Geneva Seal)를 표기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제네바 지역에 법인등기를 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시계가 미국, 일본 등지에도 딜러들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가장 주요한 수출지역은 중동이다.

- 2007년 6월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조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8명이다.

③ 위 각 기사의 취재 및 기사 작성에 관여한 피고 소속 기자 김○○은 취재과정에서 스위스 시계협회 회장인 ○○○○ ○○○(○○○○)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시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가 스위스 시계 협회의 진상조사 방침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날인 2006. 8. 16. 연합뉴스에서도 제네바 특파원의

취재를 통해 이와 동일한 취지의 스위스 시계협회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다.

④ 흡소영업체인 현대흡소핑은 이 사건 시계와 관련하여 위 2006. 8. 14.자 기사가 보도된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8.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시계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전화하여 허위, 과장광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품조치를 해주었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시계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07. 4. 6.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기사의 ㉠ 부분 중 “이 사건 시계의 수입, 판매사인 원고의 광고와는 달리, 이 사건 시계가 18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 ○○○○’라는 인물도 이 사건 제조사의 창업주가 아니며, 이 사건 제조사의 본사와 공장도 제네바가 아닌 끼아소에 있고, 이 사건 시계가 일본, 미국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시계에 관한 첫 보도가 있는 후 국내 판매업체들은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중 “이 사건 시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스위스 시계협회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는 부분은 위 인정사실 만으로 그것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나 위 취재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입장에서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기사를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할 수도 없다(게다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시계가 스위스에서 생산된 시계로서 중동 및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는 것인데, 피고는 위 각 기사를 통해 이 사건 시계가 스위스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지 않았고 중동 및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도 없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이 중 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5〉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피고 언론사가 원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보도를 해주었으나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자 판결 (2007가합33984)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11월 7일 건설교통부가 주식회사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동아일보는 2007년 2월 15일 “건교부 장관 지나친 ‘고향챙기기’ 뒷말”이라는 제목하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용섭 장관이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스타일로 뒷말이 무성하다고 보도하였다. 피고는 원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07년 3월 2일 “건교부 ‘동향 인사 챙기기’ 지적 해명 부심”이라는 제목하에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07. 3. 2.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는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반응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07. 3. 2.자 기사를 보더라도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3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78)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증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33984 정정보도청구등

원 고 : 건설교통부

대표자 장관 이 용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창

담당변호사 이 연 주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 론 종 결 : 2007. 10. 17.

판 결 선 고 : 2007. 11. 7.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B3면 기사 게재부분에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내용 부분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B3면 기사 게재부분에 상자기사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내용 부분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15. 동아일보 B3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제 목 : 건교부 장관 지나친 ‘고향 챙기기’ 뒷말

- 내 용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용섭 장관이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스타일로 뒷말이 무성, 전남 함평 출신인 이 장관은 취임 후 차관은 물론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등 건교부 3대 핵심 본부장 자리를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또 장관비서관에는 대학(전남대) 후배가 임명됐고 조직을 감시하는 감사관 자리 역시 호남 출신이 차지. 이 장관의 인사스타일은 2003년 국제청장 재임 때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상당수 건교부 공무원은 “과거 어떤 장관도 이 정도로 내놓고 편중인사는 안 했다”며 “이 장관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고 일침.

나. 그러나, 이용섭은 2006. 12. 11. 원고 소속 장관으로 임명된 반면, 같은 소속 차관인 이 OO는 그 이전인 2006. 11. 28.에, 감사관은 2006. 6.에 각 임명되었다. 다만, 이용섭 장관은 취임 이후 위 기사에 언급된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좌관을 호남 출신 인사들로 임명하였다.

다. 위 보도 후 피고는 2007. 3. 2. 같은 신문 같은 면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 제 목 : 건교부 ‘동향 인사 챙기기’ 지적 해명 부심

- 내 용 : 건설교통부는 이용섭 장관의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 스타일(본보 2월 15일자 B3면 참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자 곤혹스러워 하면서 해명에 부심. 건교부측은 “일부 고위 간부들이 이 장관과 같은 호남출신인 것은 맞지만 차관과 감사관은 이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임명됐다”며 “이 장관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 건교부 공무원들은 이 장관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조직관리에서 앞으로 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기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차관 및 감사관은 이용섭 장관의 취임 이전에 이미 임명되었고,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비서관은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로서 연고에 따른 특혜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그 소속 장관의 고향을 챙기기 위해 편중인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일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

##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기사의 구성 및 성격

먼저, 이 사건 기사를 분석해 보면, 이는 크게 '원고 소속 이용섭 장관이 취임 후 차관, 감사관,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비서관을 호남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다'는 부분과 "원고 소속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 각 부분의 성격을 살펴보면, 앞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뒷부분은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소속 장관이 지나치게 연고 위주의 편중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이상 위 의견이 위 사실 이외에 또다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서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사실적 주장의 진실성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2) 차관, 감사관 임명에 관한 부분

위 사실적 주장 중 이용섭 장관이 취임 후 원고 소속 차관과 감사관을 임명하였다는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적 주장 중 이용섭 장관이 취임 이후에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좌관을 호남 출신 인사들로 임명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앞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이 원고의 3대 핵심 본부장이 아니므로 위 본부장들을 원고의 3대 핵심 본부장으로 지칭한 부분도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3대 핵심 본부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떤 본부장을 3대 핵심 본부장으로 볼 것인지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내부에서 직무의 중요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각 직위에 '가'에서 '마'까지의 등급을 부여한 결과에 따르면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은 가등급, 주거복지본부장은 다등급에 각 해당하므로 위 각 직위를 원고의 3대 핵심 본부장이라고 지칭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소속 장관인 이용섭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행정부처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인 행위로서 이를 단지 장관 개인의 문제로 보아 해당 행정부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어떤 행정부처의 고위직에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행정부처의 정책수행 신뢰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부처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07. 3. 2.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

도와 반론보도는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반응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07. 3. 2.자 기사를 보더라도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B3면 기사 게재부분에 상자 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내용 부분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정정보도의 시기는 이 판결의 확정일 이후 최초 신문발행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문구도 별지1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이 중 훈

#### 〈별 지1〉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 2. 15.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이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용섭 장관이 취임 후 차관 및 감사관을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차관 및 감사관은 이용섭 장관 취임 전에 이미 임명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별 지2〉 정정보도요구문

본지는 2007. 2. 15.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이 지나친 고향챙기기 인사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본지는 이용섭 장관이 차관 및 감사관을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보도하였습디만, 차관 및 감사관은 이용섭 장관 취임 전 임명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기 23%, 영남 27%, 호남 16%, 충청 21%, 강원 11%, 제주 2%이며, 특히 본부장 중 호남출신자의 비율이 이용섭 장관의 취임 전에는 50%였으나 취임 이후 30%로 오히려 낮아져 인사의 호남편중 사실을 찾아볼 수 없어 위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자 판결 (2007가합9017)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27일 우○○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그 약을 처방받은 후 복용하던 사람들 중 급성녹내장에 걸리거나 자살을 기도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인터뷰와 함께 원고 병원을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자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주장에 대해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 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어 달리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자신이 처방한 비만치료

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환자가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원고가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 외래교수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대한비만체형의학회 등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전공과 관계 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4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29)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반론보도를 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9017 정정·손배청구

원 고 : 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태 원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국빌딩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변 론 종 결 : 2007. 11. 29.

판 결 선 고 : 2007. 12. 2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3 기재 장면을 모두 삭제하라.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4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4. 만일 피고가 위 제2, 3항 기재 일자에 제2,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위 제2, 3항에서 정한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 중 원고 및 원고 운영 병원의 영상을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영상 삭제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전항 기재 일자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오른쪽 화면 상단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원고는 뉴스데스크의 ‘알고보니 간질약’이라는 보도 및 뉴스후의 ‘병주고 약주고’ 라는 보도에서의 토파맥스 관련 녹내장 부작용과는 관계없고, 토파맥스는 비만치료약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5 ‘정정보도문요구문’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전항 기재 일자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에서 ○○○○○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위

피고 소속 김△△ 기자는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 등을 접하게 되자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의 폐해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인들의 과잉진료행위의 문제점을 보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김△△ 기자는 실제로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기 위하여 실험을 위한 연기자를 환자로 위장시켜 다이어트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김△△ 기자는 위와 같은 실험으로 얻은 처방전 중 급성녹내장의 부작용을 일으킨 토파맥스를 처방한 원고 병원을 찾아가 원고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고 속이고 위와 같은 처방전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 상황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원고 병원의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실험자의 진료 장면과 원고의 인터뷰 장면 등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도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실험자의 진료 장면과 원고의 인터뷰 장면 등을 포함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다.

### 다.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위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도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는 등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藥주고 病주고”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진료 장면 및 원고 인터뷰 장면 등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록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하였지만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병원의 모습과 원고가 촬영된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후에서 프로작(항우울제), 써모펜(감기약), 토파맥스(간질약)가 비만치료약으로 처방 가능한 약물임을 알면서, 원고가 마치 비만치료에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처방한 것처럼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조금이라도 식욕 억제에 있는 약은 모두 비만치료제로 처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간질약 처방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②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에서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고(녹내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뉴스후에서도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다른 병원에서도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실험자가 원고 병원에서 진찰 받은 후 처방받은 약에도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뒤 이어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다(녹내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제3보도라 한다).

③ 피고는, 뉴스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가지 약을 병합해서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원고가 “왜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하느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효과면인 것 같아요. 효과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를 또 계속 오시게 하고 해야지 효과를 많이 줘야 하지만.. 그렇잖아요.”라고 답변하는 내용과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후에서 피고가 항우울제와 감기약 간질치료제 등 다섯 가지 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한 원고에게 부작용은 없느냐고 묻자 원고가 전혀 없다고 자신 있

게 말한다고 보도하면서, 원고가 “오히려 비만한 게 병이지, 약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염려가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병합 처방 부분, 이하 이 사건 제4보도라 한다).

④ 피고는 뉴스후에서, 원고 병원이 원래는 가정의학과 병원인데 비만클리닉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병원 내부는 온통 비만관련 광고로 가득하다고 하였으며, 그 후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요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비만클리닉, 전공과 관계 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비만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방송하였다(비만 연구 부분, 이하 이 사건 제5보도라 한다).

##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또는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화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시청자가 원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에서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참조).

####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 을 1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 중 00:19에서 00:20 사이에 원고 병원의 “○○○”이라는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하였고, 02:08에서 02:16 사이에 같은 날 밤 10시 50분에 뉴스 후에서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할 것이라고 광고를 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 중 35:59에서 36:01 사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도 보도된 바 있던 원고 병원의 “○○○”이라는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하였고, 36:09에서 36:16 사이에 화면의 절반 중 윗부분을 뿌옇게 처리하여 원고 병원의 대기실 장면을 내보냈으며, 21:18에서 21:19 사이에 원고 병원의 복도 장면이, 21:32에서 21:34 사이에 원고 병원 건물의 외부 전경이 각 보도되었고,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 중 수 차례에 걸쳐 진료실 내부의 모습이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의 상호를 알거나 원고 병원에 와 본 사람이라면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보도를 통하여 위 각 보도에 나오는 병원이 원고 병원이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의사가 비록 화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원고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원고 및 원고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 5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1) 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이 항우울제이고, 써모펜이 감기약이며, 토파맥스가 간질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5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비만성형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로작은 항우울제이기도 하지만 폭식, 과식 등의 식이장애의 경우 식욕증추 안정화를 위하여 처방되기도 하고, 써모펜은 감기약이기도 하지만 운동하기 30분 전에 복용하면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를 최대화시키는 등 에너지 소모를 촉진하는 약물이며, 토파맥스는 간질약이기도 하지만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어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보도에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가 단순히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이라고만 보도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에서 제목을 “알고보니 간질약”이라고 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비만치료에 쓸 수 없는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을 단순히 체중감량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이 사건 제2보도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실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자신이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환자가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이 사건 제5보도

을 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1.부터 4년간 ○○○○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의 외래교수로, 2007. 3. 1.부터 2년간 같은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의 외래교수로 각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2003. 6. 대한비만체형의학회의 정회원으로, 2004. 12. 12. 대한지방성형학회의 정회원으로 각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요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비만클리닉, 전공과 관계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비만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3, 4보도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 이 사건 제3보도

을 1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 중 19:22에서 19:57 사이에 병원에서 비만치료제로 간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를 보도한 후, 다른 병원에서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실험자로 하여금 서울 시내에 있는 10군데의 비만클리닉(이하 실험 대상 병원이라 한다)을 찾아가 처방전을 받게 하였고, 그 중 간질약을 처방한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도에서 원고 병원이 급성녹내장 환자가 처방을 받은 병원이 아니라 실험 대상 병원 중 간질약을 처방한 병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시청자들이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환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 제4보도

위 보도는 김△△ 기자가 원고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답변하는 내용으로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초상권 침해 여부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보도를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에서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었는바, 달리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라. 위법성조각 여부

### (1) 일반론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2) 공익성

이 사건 각 보도는 비만 치료를 받다가 자살기도를 하고, 급성녹내장을 앓게 되는 등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의 폐해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인들의 과잉진료행위의 문제점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만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 (3) 진실성 및 상당성

#### (가) 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가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대한비만학회는 2003. 4. 16. '비만지침'이라는 자료에서 비만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약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 등을 기재하여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는 시부트라민과 올리스타트 뿐이라고 발표한 사실, 김△△ 기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김 모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이모, 강모, 김모, 김모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의사들의 의학적 자문 등 다양한 취재자료를 수집한 후 이러한 내용을 위 보도에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는 정식으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가 아니고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체중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서 비만치료제로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의 약품이어서 의학적 내부에서 그 효과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약제가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실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심지어 간질약까지"라고 하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의사들이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 등을 과잉처방 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보도의 위법성은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제2, 5보도

위 각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각 허위 내용의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및 방송경위, 그 표현 방법, 위 보도가 방송된 '뉴스데스크' 및 '뉴스후'의 사회적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2007.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4. 정정보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 가. 정정보도 등

(1) 이 사건 제2, 5보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써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3 기재 장면을 삭제하여야 한다(원고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영상의 삭제도 구하나, 원고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그 삭제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피고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5보도로 허위사실을 방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후 프로그램에서 별지 목록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보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보도가 방송된 방식과 그 비중 및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목록 4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 (1), (2)항 기재 일자에 (1), (2)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1), (2)항에서 정한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이 경 민

판 사 김 은 정

판 사 정 경 희

